



제299회 임시회
2011.04.13.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3.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함(안 제7절)
- 나.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안 부칙)
 - 1)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하고,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2010. 6. 29.)됨에 따라,
- 현행 조례의 “전문계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전문계고에 포함되었던 “마이스터고”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특수목적고”로 구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고교체제 개편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계고		없음	일반고		제79조의2
전문계열	전문계고	없음	‘특성화고’로 일원화		제79조의2 제91조
	특성화고	제91조			
	마이스터고	제91조의2			
특목고	특목고 중 농·공·수산·해양, 과학고, 외교, 국제고	제90조	⇒	과학고	제79조의2 제90조
	예고, 체고			외고·국제고	
자율계열	자율형 사립고	제105조의3		예고·체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없음		
자율계열	자율형 사립고	제105조의3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제79조의2 제105조의3 제105 조제항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기숙형고	

※ 마이스터고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목고’로 분류(제90조 관련)

○ 충북의 유형별 고등학교 현황

고등학교 유형	학교수	학 교 명
일반고	47	▪ 아래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특성화고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농고, 보은자영고, 충북공고, 충주공고, 제천산업고, 청주공고, 인터넷고, 전산기고, 제천디자인고, 충주상고, 한림디자인고, 제천상고, 부강공고, 미원공고, 현도정보고, 보은정보고, 옥천상고, 영동산업과학고, 학산정보고, 영동인터넷고, 진천생명과학고, 진천상고, 증평공고, 증평정보고, 단양공고, 충주농고, 대성여상, 청주여상 ▪ 대안학교 - 양업고
특수목적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청주,충산), 체육고 ▪ (충북반도체고)
자율고	1	▪ 청원고
합계	83	

관 계 법 령 발 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1. ~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

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6.29]